

##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제재방안

이 승 현\*

### 국 | 문 | 요 | 약

전통적인 형법체계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효율적인 형사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제재방식으로는 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한 자유형, 기업 및 기업대표자에 대한 벌금형, 제한적으로나마 몰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방식은 기업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인인 개인과 동일한 형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가벼운 처벌로 여기게 되고 영업이익을 위해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형사제재 방식 가운데 자유형과 벌금형은 그 법정형을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보다 인상이야 하고, 특히 벌금형의 경우에는 일수벌금형제도의 마련이나 자연인과 기업의 벌금액을 분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몰수 역시 무형적 이익이나 제3자의 소유물의 경우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 기소 또는 유죄판결과 독립된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원상회복,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도입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은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제재형태보다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주형으로 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개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부과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전문지식이 구비되어야 하고, 보호관찰을 위한 상당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보호관찰로 인한 비용증가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부과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불성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기부보다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 주제어 :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 벌금형, 원상회복,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I. 서론

대체로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되는 기업범죄는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행위수법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범죄란 일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기업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행위”<sup>1)</sup>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기업범죄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형사적 제재가 주를 이룬다. 즉, 자연인의 경우는 범죄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나, 기업범죄의 경우 자연인과는 달리 기업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경제적 타격 등의 형벌을 통해 기업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sup>2)</sup> 그러므로 기업범죄의 경우 자연인의 범죄와 달리 특징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주의에 바탕을 둔 적절한 형사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연인에 대한 제재유형을 기업에 대한 제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방식으로는 기업 자체에 대한 제재와 기업의 대표인 자연인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기업운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활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효율적인 규제가 되지 못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형사제재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업 자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식을 강구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범죄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이론적 근거, 현행법상 운영하고 있는 형사적 제재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행 기업범죄의 제재형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장치로서 새로운 형

1) Seven Box, *Crime and Mystification*,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 1983, 20-23pp.

2) Stephen Yoder, “Criminal Sanctions for Corporate Illegality”, 69 *J. Crim. L. & Criminology* 40, 45(1978).

태의 형사제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근거

기업에 대한 제재형태는 민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 그리고 형사적 제재로 나뉜다. 이 가운데 형사적 제재방식은 법인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행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확실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형사적 제재가 요구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형법체계는 자연인에 초점을 두어 범죄론과 형벌론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하여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법적 근거 및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sup>3)</sup>

### 1. 기업의 형사처벌의 필요성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라는 법언에 따라 자연인에게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의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즉, 기업 구성원의 개별적인 행위만이 기업에 의해 행해진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형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개인의 형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단체이익을 억제할 수 없게 되고, 기업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인형벌은 사회적 손해의 정도와 개인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없게 되므로 충분한 응보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분야를 나누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분화되어 있어 행위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3) 기업처벌의 근거와 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07, 31면 이하 참조.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sup>4)</sup>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개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5)</sup>

## 2.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학설검토

법인에 대하여 범죄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범죄능력 인정설은 (a) 자연인의 행위가 규범적 평가에 의해 형법상 행위로 인정되듯이 법인의 행위도 형법적 의미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법인의 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는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의 법인 고유의 의사이고, 법인의 인격은 개인의 인격과는 다른 법인 그 자체의 인격으로 법인도 기관을 통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며,<sup>6)</sup> (b) 법인의 구성원의 행위는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법인의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법인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sup>7)</sup> (c) 민법상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형법상 부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설립목적이 적법해야 한다고 해서 성립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sup>8)</sup> (d)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기보다는 법적 비난이라고 할 수 있고, 형벌의 본질을 교육형에 두고 법인의 의사형성인 단체의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면 법인에게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9)</sup>고 본다.

반면에 범죄능력 부정설은 (a) 범죄행위는 인간의 자연적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4) 낮은 직급에 있는 기업 구성원까지 책임영역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의 조직화(Organisierung der Verantwort)는 조직화된 무책임(organisierte Unverantwortlichkeit)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2004, 38면).

5) 기업에게 범죄에 대한 대처여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행정법상 과태료 내지 행정제재의 부과 이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김재윤, “위의 논문, 40면).

6) 김성규, “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제방식”, 법조 제53권 제11호, 2004, 118면.

7) 김재윤, “앞의 논문, 53면.

8)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4판」, 삼지원, 2008, 88면.

9) 박광섭,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27면.

자연적 의사와 육체를 갖지 않은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고, (b) 책임의 윤리적 성질을 강조한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범죄능력을 부정하며, (c) 법인을 처벌하면 그 효과가 범죄와는 관계없이 다른 구성원도 처벌하는 것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d) 법인은 적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게 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를 생각할 수 없으며, (e) 법인에게서는 사형 또는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어야 하며, (f) 법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과 같은 행정벌 또는 질서위반벌을 가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형벌을 가할 필요가 없다<sup>10)</sup>고 한다.

우리나라의 통설<sup>11)</sup>과 판례<sup>12)</sup>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면서 양벌규정을 통해 형사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보고 있는 기존의 형법이론 체계는 기업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다만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성질상 반윤리성이 강한 범죄행위나 기업을 제외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3)</sup>

### Ⅲ. 기업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형사 제재방식

현행 기업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내지 자유형, 법인인 기업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업의 범죄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생긴 경우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기업의 이익물을 몰수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형사제재 방식으로 벌금형, 자유형, 몰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박상기,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07, 71면.

11) 배종대, 형법총론「제9개정판」, 홍문사, 2008, 212면;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2008, 95면 9하

12)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 1483 판결;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3도1375 판결.

13) 박광섭, 앞의 논문, 27면.

## 1. 벌금형

기업범죄의 경우 법인에게 사형이나 자유형을 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대부분 벌금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범죄의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륙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현행법상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의 대부분은 양벌규정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양벌규정에서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벌금이고 그 벌금액은 자연인인 행위자에 대한 벌금액과 동일하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기업범죄가 빈번하지 않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기업에 부과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형법과 행정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법상 질서위반금(Geldbuße)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질서위반금의 액수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고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제재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sup>15)</sup> 첫째 원상회복(restitution)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명령(remedial order), 둘째 다른 제재로 충분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 내부에서 장래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할 때 활용되는 보호관찰(probation), 셋째 벌금형(fine)이 있다. 기업범죄의 양형가이드라인은 모든 연방 중죄 및 Class A 경범죄(사기, 절도, 탈세, 독점금지법 위반, 돈세탁, 뇌물수수, 리베이트)에 적용된다. 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상 벌금관련 조항은 환경범죄, 식품·의약품 범죄, 수입통관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의 부과는 불법적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사후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14) 이기현/박기석,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39면.

15) Melissa Ku/ Lee Pepper, "Twenty-Third Survey of White Collar Crim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45 Am. Crim. L. Rev. 293(2008).

을 제공하고 불법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활용되기도 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활용되기도 하는 한편, 몰수, 기소비용의 추징 등과 같은 그 밖의 벌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이 범죄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범죄적 수단을 통해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 전부를 박탈시킬 정도의 벌금이 선고된다.<sup>16)</sup> 이는 범죄의 목적이 기업의 역사와 특징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향, 주위정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벌금은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 of offense)과 기업의 유책성(culpability)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양형 가이드라인 제8장 C2.1(a)과 (b)에 특별히 목록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양형가이드라인은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범죄(사기, 절도, 탈세)와 보다 덜 계량화할 수 있는 범죄(뇌물수수, 리베이트, 독점금지법 위반, 돈세탁)를 목록화하고 있다.<sup>17)</sup> 환경, 식품·의약품, 수출통관을 포함한 범죄는 C2.1(a)과 (b)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원은 벌금형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형법 제3553조와 제3572조의 일반적인 양형규정을 활용하고 있다.<sup>18)</sup> 법원은 제C2.1조에 따라 결정한 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범죄수준, 기본벌금, 유책성, 벌금의 범위, 실제적 벌금을 결정한다.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벌금은 양형규정을 통해 자연인과 동일한 벌금액이 법정되어 있어 법인의 자산과 비교해볼 때 벌금액의 상한액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벌금형은 범죄에 의한 수익보다 벌금액이 적어 위하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sup>19)</sup> 자연인과는 달리 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의 대처방안이 없고, 법인에 대한 벌금의 구체적 손해대상자가 기업범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하락이나 제품가격의 인상 등으로 주주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sup>20)</sup> 또한 일부에서는 기업이 벌금형을 기업이윤을 증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현행 벌금액으로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16) U.S.S.G. MANUAL §8C1.1.(2007).

17) U.S.S.G. MANUAL §8C2.1.(2007).

18) U.S.S.G. MANUAL §8C2.10.(2007).

19) 단순한 금전박탈은 법인에 대하여 큰 타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낮은 벌금형은 형사적 제재로서 범죄억지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있다(이기현/박기석, 앞의 책, 57-58면).

20) Richard S. Gruner, "To Let the Punishment Fit the Organization: Sentencing Corporate Offenders through Corporate Probation", 16 Am. J. Crim. L. 1(1988)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임을 알면서도 기업이익을 위해 재범을 하기도 한다.<sup>21)</sup>

따라서 기업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연인과 기업의 벌금액을 분리하여 기업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이전에는 자연인과 기업에 동일한 벌금형이 법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양형개혁법과 양형지침에 의해 기업에 대하여는 자연인보다 훨씬 중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2)</sup> 일본도 최근 양벌규정에서 자연인과 기업의 벌금액을 분리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자연인보다 고액으로 설정하고 있다.<sup>23)</sup> 둘째, 현행 벌금형 체계는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나 기업의 능력에 따라 벌금의 액수에 있어서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24)</sup> 기업에 대하여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면 자유형의 일수계산에 부합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자유형을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범죄로 인해 얻는 수익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크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벌금형의 벌금액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벌금의 상한은 범죄 자체의 불법정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 범죄적발의 빈도, 타형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자유형

자유형은 수형자를 개선·교육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적어도 구금기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 효과도 있다.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하나 자유형을 선고하는 예도 간혹 있다. 기업범죄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은 비록 단기일지라도 그 자체가 중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5)</sup> 더욱이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같은 상류층

21) 김광준/원범연,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03-204면.

22) U.S.S.G, MANUAL §8C(2007).

23) 山中敬一, 刑法總論(Ⅰ), 成文堂, 2000, 192夏.

24) 김광준/원범연, 앞의 책 209면; 정용기,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호, 2008, 203면.

사람들에게 어찌면 벌금보다는 자유형이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범죄에서 자유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자유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기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제재효과가 적다. 그러므로 기업범죄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자유형의 형기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3. 몰 수

몰수는 범죄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 범죄의 과실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대물적 보안처분이자 형벌로서의 성질을 갖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유체물이나 권리 또는 이익이 화체된 유체물에 한정되므로 채권 기타 무형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무형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몰수대상이 유체물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만 가능하고 범죄수익이 채권 기타 무형적인 이익인 경우에는 몰수뿐만 아니라 추징도 불가능하다.

현행 몰수제도는 기업범죄에 있어 적용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기업범죄에 의해 취득된 이익은 대부분 무형적 이익인 경우가 많으므로 무형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이익 및 가치몰수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제73조, 제74c 조에서 이익 및 가치를 추징·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형법이 아닌 마약특례법에서 무형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범죄로 인해 취득된 무형적 이익의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sup>26)</sup> 둘째, 기업범죄는 대부분 증거확보 및 피해내용,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 또는 유죄판결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sup>27)</sup> 셋째, 기업범죄로 인한 이익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3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5) 神山敏雄, 經濟犯罪の研究, 成文堂, 1991, 144頁.

26) 장영민/조영관, 經濟범죄의 유형과 對策방안, 韓國刑事정책연구원, 1993, 111頁.

27) 조근석,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입법론: 자금세정규제를 중심으로”, 刑事정책연구 제11권, 1992, 133頁.

#### 4. 소 결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대부분이 가벼운 제재이며, 벌금형이나 기업경영자에 대한 단기자유형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업범죄에 대한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미하게 처벌됨으로 인해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행위를 별다른 제약 없이 하게 되고, 기업범죄를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자연인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 체계로는 자연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는바 이는 기업이 경미한 제재로 여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바 기업범죄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제재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 IV.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새로운 유형

기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방법과 형사책임의 궁극적인 귀속자인 자연인의 범죄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다.<sup>28)</sup> 특히,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기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실행행위를 한 자연인을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방식으로서 대체·보완될 수 있는 보안처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up>29)</sup> 이하에서는 바람직한 형사제재의 방식으로서 도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재방식인 원상회복,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8) 박강우,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8면.

29) 새로운 기업제재수단으로서 보안처분의 도입방향에 관하여는 이주희,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한양법학 제23집, 2008, 445면 이하 참조.

## 1.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제도

기업범죄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은 그 피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대부분 피해구제나 배상이 민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거대기업에 맞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하기도 힘들고, 기업범죄가 특정 개인에 대하여 법익침해를 초래하기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제재 가운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의 형사법적 위반으로 야기된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상회복(restitution), 구제명령(remedial measures),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지(notice to victims) 등이 있다.<sup>30)</sup> 원상회복의 목적은 재정적 지원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완전하게 하는데 있다.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한 원상회복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할 수 있다.<sup>31)</sup> 원상회복에 부합하는 침해가 아니더라도 양형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 조건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sup>32)</sup>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란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가 지명한 자에게 재산을 반환하거나 반환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전지불, 상해의 경우 치료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비 및 관련되는 특수치료비와 재활치료에 상응하는 금액, 일실수익, 사망한 경우 장례비와 부수적인 경비,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나 교통비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와 공판에 소요된 비용 등도 포함된다.<sup>33)</sup> 원상회복은 법인이 독립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배상, 복잡함, 선고 과정의 지연 등 강제적 배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34)</sup>

30) 원상회복은 독자적으로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선고된다(U.S.S.G. MANUAL §8B1.1(a)(1)-(2)). 구제조치와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선고된다(U.S.S.G. MANUAL §§8B1.2, 8B1.3).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지는 독자적으로 부과된다(U.S.S.G. MANUAL §8B1.4).

31) U.S.S.G. MANUAL §8B1.1(a)(1)(2007).

32) U.S.S.G. MANUAL §8B1.2(2007).

33) 18 U.S.C. §3563(A)(b)(1)-(4).

법원은 올바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위반으로 인한 장래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명령을 과할 수 있다.<sup>35)</sup> 구제명령은 식품 및 마약범죄에서의 상품리콜이나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정화 명령을 포함한다.<sup>36)</sup> 구제명령은 배상이 손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일시적 위반일 때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현혹시키는 행위나 사기를 저지른 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지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sup>37)</sup> 이 경우에는 범죄의 불명확한 피해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원상회복제도는 피해자의 피해를 민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로,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기업범죄에서 피해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은 기업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기업으로부터 박탈할 수 있고, 기업시장에서 부당한 우위를 제거하여 실질적 정의를 유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이 효율적인 형사제재수단으로 발전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의 대상이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형사적 제재가 주로 벌금형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에 대한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피해자 구제와 기업체질의 개선을 하기 위해 원상회복명령은 독립된 제재보다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주형으로 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sup>38)</sup>

## 2.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란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그 준수여부를

34) U.S.S.G. MANUAL §8B1.1(b)(2007).

35) U.S.S.G. MANUAL §8B1.2(a)(2007).

36) U.S.S.G. MANUAL §8B1.2(2007).

37) U.S.S.G. MANUAL §8B1.4(2007).

38) 천진호, “기업범죄와 형사적 제재”, 법학논고 제1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86면.

보호관찰관이 감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형벌을 말한다.<sup>39)</sup> 이는 기업이 위협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환경범죄와 같이 개인에 의한 범죄라기보다는 법인의 구조에 근거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적절한 경우 장래 그 기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업의 정책 결정과정을 재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의 제정으로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시하면서 벌금형과 선택적 또는 병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0)</sup> 동법은 보호관찰의 준수요건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재범금지, 금제품 소지금지 등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필수적 준수요건과 가족부양, 피해배상 등 법원의 재량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 재량적 준수요건이 있다.<sup>41)</sup> 다만 보호관찰을 함에 있어서 기업에게 과도한 사법적 통제를 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의 준수요건은 법에 열거된 양형목적, 즉 공정한 형벌(just punishment), 억제(deterrence), 사회보호(protection of public), 교정처우(correctional treatment), 양형불균형 해소(to avoid unwarranted sentencing disparity), 원상회복 restitution)에 부합하도록 하고, 자유와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요건은 법에 열거된 양형목적 달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양형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는 1991년 양형지침에서 법인에 대한 형벌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종래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이행 감시 외에 법인에게 의무준수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도입하였다. 연방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다.<sup>42)</sup> 양형가이드라인에서 보호관찰의 선고는 첫째, 사업활동상의 특별한 변화나 한계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고, 둘째, 과거범죄를 발각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외부적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셋째, 양형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sup>43)</sup> 판사는 보호관찰의 조건을 설정함에

39) 이기현/박기석, 앞의 책, 131면.

40) 18 U.S.C. §3551(c).

41) 18 U.S.C. §3563(a).

42) U.S.S.G. MANUAL §8D1,2(a)(1)-(2)(2007).

43) Richard S. Gruner, "Beyond Fines: Innovative Corporate Sentences Under Federal Sentencing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sup>44)</sup> 예를 들면 법원이 보호관찰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성격이나 주위사정, 기업의 역사와 특징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면” 되고, 양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자유와 부의 박탈을 수반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 법원은 기업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다른 연방, 주, 지역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5)</sup>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지 않도록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재산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기업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형벌과는 달리 법인의 특성에 따라 범죄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과도한 개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부과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의 양형개혁법이나 양형지침에서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요건이나 방법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관찰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전문지식이 구비되어야 하고, 보호관찰을 위한 상당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보호관찰로 인한 비용증가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부과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보호관찰의 준수요건을 위반한 경우 준수요건이나 집행유예기간을 취소·변경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 3.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도 벌금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보수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Guidelines”, 71 Wash. U. L. Q. 261, 270(1993).

44) U.S.S.G. MANUAL §8D1.3(2007).

45) U.S.S.G. MANUAL §8D1.3(c)(2007).

하는 형벌에서 착안한 제도이다.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재로서 일정한 사회기금의 납부, 실업자 고용, 도시재개발 참가, 유출된 오염물질의 제거활동 참여,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에의 참여, 해외원조계획에의 참여 등이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유형으로는 ① 보호관찰 조건으로서의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② 감경조건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③ 불기소의 조건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법원은 구제가 위반으로 야기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sup>46)</sup> 사회봉사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법인에게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권한을 줄 수 있을 만큼 지식, 시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효과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법원이 내리는 사회봉사 명령은 ‘직접적인 재산제재보다는 덜 바람직함’ 재산적 처벌에 대한 대안적 형태이다.

영국의 1973년 형사법원권한법(the Power of Criminal Courts Act) 제1조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sup>47)</sup> 이는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형태로 부과하고, 보호관찰처럼 일정한 형벌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첫째 동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둘째 명령의 내용에 있어서 기업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의 수행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공제도 없고, 사회봉사명령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에 대하여도 기업은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업에게 동의를 얻을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벌금형을 선택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게 명령의 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48)</sup>

미국은 양형지침 제8장 B.1.3.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형사제재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기업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다.<sup>49)</sup> 반면에 기업에 대

46) U.S.S.G. MANUAL §8B1.3(2007).

47) James Gobert, "Controlling Corporate Criminality: Penal Sanction and Beyond", 2 Web Journal of Current Issues 6(1998).

48) Brent Fisse, "Community Service as a Sanction against Corporations", 5 Wisconsin Law Review 970, 981(1981).

49) U.S.S.G. MANUAL §8B1.3(2007).

하여 간접적인 재정상 부담을 과하기 위한 사회봉사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벌금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정상 부담을 과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이 인정된다. 미국 사회봉사명령의 특징은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이다.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업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준다는 점에서 응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사회봉사내용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효과적이고, 내부인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적 교육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감독을 통해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자칫 잘못하면 기업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인식되어 비효율적인 형사제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인력보충을 위해 기업이 생산량 감축이나 소극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도 있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사업으로 사회봉사를 대신하려 한다면 타인에게 떠넘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금전적인 기부보다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4.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해산

기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하나 제시되는 것이 기업의 영업정지나 해산 등 기업의 운영을 금지·제한하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영업정지·금지란 일정한 직업이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범죄를 행하였거나 장차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기업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제재로서 개인형벌의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기업범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방지하면 상습화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영업정지나 금지를 통해 범죄동기를 억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1994년 개정형법 제131조 내지 제139조에서 기업의 해산과 일정기간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경제범죄등에 관한법률 제14조에서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관련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업에 의한 부의 창출을 봉쇄하고 종업원 등 기업의 구성원이나 채권자 등 사회구성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50)</sup> 따라서 기업의 영업정지나 해산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 V. 결론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하에서는 기업은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양벌 규정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의 경우 피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급격하게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의 규제형태에서 벗어나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리라 본다.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의 형태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기업은 완화된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통한 제재를 받는 기업은 때때로 이러한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불법행위에서 합법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다만,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혜택으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 방법과 절차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50) 김재봉,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2006, 807면.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광준/원범연,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박강우,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상기,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08.

배종대, 형법총론「제9개정판」, 홍문사, 2008

오영근, 형법총론「보정판」, 박영사, 2006.

이기현/박기석,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2008.

장영민/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4판」, 삼지원, 2008.

Seven Box, Crime and Mystification,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 1983.

山中敬一, 刑法總論(Ⅰ), 成文堂, 2000.

神山敏雄, 經濟犯罪の研究, 成文堂, 1991.

### 2. 논문

김성규, “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제방식”, 법조 제53권 제11호, 2004.

김재봉,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2006.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07.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2004.

박광섭,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이주희,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한양법학 제23집, 2008.

정용기,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호, 2008.

조균석,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입법론: 자금세정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1992.

- 천진호, “기업범죄와 형사적 제재”, 법학논고 제1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박강우, “최근 미국의 기업범죄 실태와 규제동향”,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Brent Fisse, “Community Service as a Sanction against Corporations”, 5 Wisconsin Law Review 97(1981).
- James Gobert, “Controlling Corporate Criminality: Penal Sanction and Beyond”, 2 Web Journal of Current Issues 6(1998).
- Melissa Ku/ Lee Pepper, “Twenty-Third Survey of White Collar Crim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45 Am. Crim. L. Rev. 293(2008).
- Richard S. Gruner, “Beyond Fines: Innovative Corporate Sentences Under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71 Wash. U. L. Q. 261(1993).
- Richard S. Gruner, “To Let the Punishment Fit the Organization: Sentencing Corporate Offenders through Corporate Probation”, 16 Am. J. Crim. L. 1(1988).
- Stephen Yoder, “Criminal Sanctions for Corporate Illegality”, 69 J. Crim. L. & Criminology 40(1978).



## The Effective Criminal Sanction against Corporation Crimes

Lee, Seung-Hyun<sup>\*</sup>

Many corporations have committed crime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development. Now, we realize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regulating the corporation crim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punish the corporation only through the traditional criminal laws.

The traditional crimi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ion crime include imprisonment, fine and forfeiture. But criminal sanctions cannot expect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of crimes because it has been provided just only fine as a sanction against corporations in a position denying criminal capacity.

We should improve the inefficiency of the fine penalty and imprisonment against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fine in order to substantially decrease the corporation crimes taking into account generally the average assets of corporation.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to the amount of fine between human beings and corporation in the provision of bilateral punishment. Also, it is ideal to introduce daily fine system in the long view. New pe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ion, including probation, restitution, community service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orporations.

❖ Keywords : criminal sanction against corporation, fine, restitution, probation against corporation, community service.

투고일 : 2009. 2. 11 / 심사(수정)일 : 2009. 2. 23 / 게재확정일 : 2009. 2. 27
---

---

<sup>\*</sup>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Law